



Korean Tax Newsletter

2024년 6월

CONTENTS

세법개정

-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시행

세무동향

- 기획재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
- 지방시대 신(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예규판례

○ 법원

- 구 지방세법 제 107조 본문 제 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사유에 관한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 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9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반도체 생산설비 중 케이블을 지지·보조하는 설비인 케이블트레이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2022.12.31. 개정 규정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기획재정부

-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에 대해,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행정안전부

- 사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재산세 분리과세 제외 개정에 관한 부칙(비율 점진 축소)의 구체적 해석 ('21 년, 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개정 관련)

○ 국세청

- 국조법 제 29 조 제 1 항 단서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과거 피합병법인이 연결소득금액에서 공제시킨 결손금 상당액을 합병법인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법개정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시행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4.6.1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 [기준금액 상향] '24.7.1. 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부가령 제 109 조 제 1 항).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 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하여 '24.7.1. 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의무발급 확대] '24.7.1. 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 억원 이상에서 8 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부가령 제 68 조 제 1 항)
-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 [품목 확대] '24.7.1. 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으로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 [전용계좌 사용]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7.1.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함

세무동향

기획재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6.3.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 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6.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연장(3→5년)하여 기업 부담 완화
-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기간 높은 R&D 및 투자세액공제(점감구조)를 받도록 하여 투자 및 기업성장 유도

○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 [바우처 지원]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하여 일부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 지원
- [재정사업 우대] 수출, 인력, R&D, 용자보증 분야 정부 지원사업 우선선발, 가점부여 등 우대

○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기업 성장과정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릴레이 지원(대출, 펀드, 보증 등) 강화
- 민간 선별기능 활용 R&D 및 AI 확산 등으로 기술혁신 유도
- M&A를 통한 신산업 진출 및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

○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

- [기술정보] ‘(가칭) 기술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 VC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
- [재무정보] 신용정보원의 재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

지방시대 신(新)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6월 20일(목), 제 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6.2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 [경북] 구미(구미국가산단 1~5단지), 안동(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단) 등
- [전남] 광양(광양국가산단 동호안), 여수(울촌 제1일반산단) 등
- [전북]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 탄소소재국가산단) 등
- [대구] 수성구(수성알파시티), 달성군(대구국가산단) 등
- [대전] 유성구(원촌 첨단바이오혁신지구, 안산 첨단국방산단)
- [경남] 고성(양촌·용정 일반산단)
- [부산] 동구(북항재개발 2단계지역), 남구(문현금융단지)
- [제주] 서귀포(하원 테크노캠퍼스)

○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주요 내용

- [소득·법인세]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 [취득·재산세] 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5년 50% 감면 등
-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 [이자·배당 소득세]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24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7.31.(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12월 결산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4.7.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범위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함
 -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 2① ('23.2.28. 개정)

예규판례

[법원] 구 지방세법 제 107 조 본문 제 1 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사유에 관한 3 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법원 2024.5.30. 선고 2021 두 58059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 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 107 조 본문 제 1 호, 제 127 조 제 1 항 본문 제 1 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1 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의 추징사유에 관한 3 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안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에서 구 지방세법 제 107 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 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하였음. 원고는 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정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제 107 조 및 제 127 조 제 1 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 본문 제 1 호에서 비과세사유 중 하나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를 드는 한편, 각 본문 단서에서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 추징사유’)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 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1 조 제 1 항 본문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중 하나로 쟁점 추징사유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위에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 107 조 본문 제 1 호, 제 127 조 제 1 항 본문 제 1 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1 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 추징사유를 근거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3 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는 없음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3 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때부터 다시 3 년의 유예기간이 진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다도 이미 그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 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27 조 제 1 항 등에서 정한 유예기간 기산일과 과세기준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법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 269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 조 제 9 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국승)

(대법원 2024.6.13. 선고 2023 두 39809 판결, 파기환송)

■ 쟁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 269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 조 제 9 호의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판결요지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1) 이 사건 규정은 '제 8 호의 2 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2) 이 사건 규정의 '제 8 호의 2 에 따른 자본거래'는, 제 8 호의 2 의 '제 8 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0 조 제 1 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대응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제 8 호의 2 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3) 당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호는 수익의 하나로 '제 88 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 17033 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제 88 조 제 1 항 제 8 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다. 그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함으로써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그 분여받은 이익이 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음

4)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그런데도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원] 반도체 생산설비 중 케이블을 지지·보조하는 설비인 케이블트레이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 지 2359, 2024.4.29., 취소)

■ 쟁점

반도체제조업 등 생산공장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트레이’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취급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16.1.15.~2020.10.23. 경기도 000 일원에 건축물(이하 “쟁점①건축물”)을 취득(신축)하였고, 2019.7.31.~2020.2.7. 경기도 000 일원에 건축물(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하고, 쟁점①건축물과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케이블트레이(전력공급선 받침용 설비, 이하 “쟁점케이블트레이”) 설치비용(이하 “쟁점비용”)을 포함하여, 2016.3.14.~2020.12.22.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가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케이블을 지지·보조하는 설비로서 쟁점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 이를 거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쟁점건축물에 반영구적으로 고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천장 및 벽체에 이격하여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 설치한 구조물로서 설치 목적이 쟁점건축물의 효용 및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보다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지지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가 보호하고 있는 케이블에 대하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보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인 케이블에 대한 종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지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쟁점건축물 내에 설치된 생산설비인 클린룸 내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탈부착이 용이하게 설치되어 있어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생산설비의 보조설비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받치는 선반과 같은 구조물로서 「지방세법」 제 6 조 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2022.12.31. 개정 규정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 서 10372, 2024.4.30., 기각)

■ 쟁점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2022.12.31. 법률 제 19199 호로 개정된 것) 제 2 항의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당초 2019년 ~ 2022년(이하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55 조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신고하였는데, 이후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2022.12.31. 법률 제 19199 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제 2 항(이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적용세율 19%)한다는 사유로 2023.6.7. 처분청에 쟁점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개정규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2023.1.1. 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개정규정의 부칙 제 10 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20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 1 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규정은 2023.1.1. 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 중 3452, 2024.5.13., 취소)

■ 쟁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출한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100% 출자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에 각각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하 위 해외현지법인들을 합하여 '이 건 해외현지법인'이라 함)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임직원에게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2022.7.8.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해외 고객사에 납품한 장비의 조립·설치, 시운전, 사후관리 용역(A/S) 등)가 청구법인을 위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손금불산입한 쟁점인건비를 2019~202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0.31. 미환류소득 착오 신고분에 대해서는 경정하였으나,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음.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함

결정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과 같이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2 중 2416, 2014.5.28., 같은 뜻임), 이 건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중국 및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 및 A/S 를 제공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청구법인과 고객사와의 장비납품 계약서에서는 현지에서 장비를 조립, 설치 및 설치 이후의 무상 수리 보증 의무 등이 판매자인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책임에 따라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였고, 현지 파견 임직원들은 고객사에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A/S 업무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파견 직원 품의서,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 보고한 문서, 역량평가 등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해외파견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중국 및 베트남 관련 부서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에 대해,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371, 2024.5.3.)

■ 질의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 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을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 사실관계

- 중고 자동차 판매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은 '08~'09 년에 중소기업으로 사업 중,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유예 없이 '10~'20 년에 비중소기업이 되었음
- 중소기업이 독립성 요건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나목(5 천억이상 기업 지분율 30% 이상) 미충족으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②(3)에 따라 유예기간 미적용
- '21 년에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으며, '22 년에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
- A 법인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유예 적용이 불가하다며 과세예고 통지('23.9.)
- A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을 신청하면서, 동 해석 신청

회신

을설(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이 타당함

[기획재정부]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6.13.)

■ 질의

보험회사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모집 용역을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있음
-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핀테크사는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이 불가능하여 보험모집(대리·중개) 또한 불가능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해 핀테크사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함('23.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3.7.19.)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 항, 「보험업법」 제 83 조, 제 8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 32 조 제 1 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3 조의 3 제 5 항 제 3 호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회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 항, 「보험업법」 제 83 조, 제 8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 32 조 제 1 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3 조의 3 제 5 항 제 3 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사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재산세 분리과세 제외 개정에 관한 부칙(비율 점진 축소)의 구체적 해석(‘21년, 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개정 관련)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409, 2024.4.16.)

■ 질의

‘20년 이전 설립된 사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재산에 대해 ‘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의를 변경된 경우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0728호, 2020.6.2.) 부칙 제 3조 적용 여부

회신

‘20.12.29. 「지방세법」 제 107조를 일부 개정하여 신탁 재산을 통한 납세의무 회피 방지 등을 위해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20.6.2.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조 제 8항을 일부 개정하여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용 토지, 사모형 부동산 리츠·펀드 토지 등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0728호, 2020.6.2.) 부칙 제 3조에서는 ‘제 102조 제 8항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제 8호 및 제 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제 8호 및 제 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하 ‘쟁점 경과규정’)

(…) 본 건 질의는 ‘20년 이전 설립된 사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재산에 대해 ‘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의를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쟁점 경과규정 단서의 적용에 관한 질의인 바, 쟁점 경과규정의 제정 취지 및 우리부 적용 기준(「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 부동산세제과-2083호, 2021.7.30.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탁자 및 위탁자 관계 등 관련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자체가 개정 전(‘20.6.2.)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 국조법 제 29 조 제 1 항 단서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국조-0016, 2024.5.22.)

■ 질의

질의법인이 100% 자회사 베트남 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100% 자회사 베트남 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 조 제 1 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 27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 조 제 1 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 27 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제 1 항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084, 2024.5.30.)

■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한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서비스형 혹은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로 번역하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IT 인프라 및 플랫폼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의 서비스임

■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A(이하 “신청법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신청법인이 개발한 “BBB(영문명, CCC)”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임개발사가 독자 개발하기 어려운 서버기능 구현과 서버 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게임개발사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함

*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기존 패키지 유통과 달리 별도 하드웨어 설치가 필요 없고, 원격 지원도 가능해 비용 효율적으로 사업 가능함

회신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과거 피합병법인이 연결소득금액에서 공제시킨 결손금 상당액을 합병법인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241, 2024.5.31.)

■ 질의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신청법인”,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후 합병법인이 연결배제되는 경우, 연결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종전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을설)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 가능함
- (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 지원사업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수탁운영, 오폐수처리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건설 및 환경신기술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됨
- ○○플랜트(주)는, 친환경 사업 강화를 위해 신청법인을 인수하여 소각·매립·수처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구축할 목적으로 2020. 12. 투자법인(SPC, 100% 출자 자회사)을 설립한 후, 2020. 12. 31.을 간주취득일(사업결합일)로 하여 신청법인 및 신청법인의 완전자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2021년부터 신청법인 및 신청법인의 완전자회사들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음
- 신청법인은 2021. 12. 1.을 합병기일로 하여 모회사 및 자회사 일부를 흡수합병 하였음
- 2023년 중 ○○플랜트(주)가 신청법인 주식 일부를 타사에 매각하여 신청법인이 ○○플랜트(주)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됨에 따라, 2023년부터 신청법인 및 신청법인의 완전자회사들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음
- 한편, 법인세법 제 76 조의 12 제 1항 단서에 의거,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21년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들에서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은 2021년 ○○플랜트(주)의 각 연결법인(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결법인으로 한정)으로 배분된 바 있음

회신

(갑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이하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합한 경우로서, 이후 합병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 76 조의 12 제 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파트너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파트너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Back to top](#)